

# 청과물 위(수)탁 판매약정서

<b>■ 출하자 작성란</b> (표의 굵은선 안에 있는 사항만 기재하여 주십시오)				
출하자 구분	① 농 협 ② 법인(농업회사, 영농조합 등) ③ 산지유통인 ④ 작목반 ⑤ 개인			
출하자명			대표자 성명	
주소			이메일 주소	
사업자등록번호	주민등록번호(비사업자만 기재)			
산지유통인 등록번호	출하자신고번호			
송금계좌번호	은행명			예금주
전화번호	휴대폰			팩스번호
주 출하품목	제주지역 농협만 표기 (출하자장려금 선지급 여부)			예 ( ) 아니요 ( )

<b>■ 회사 작성란</b>	
출하자코드번호	

(주)중앙청과(이하 '도매시장법인'이라 한다)와 (이하'출하자'라 한다)는(은) 청과물 위(수)탁 판매약정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 한다.

**제1조(판매 위·수탁)** 출자는 도매시장법인을 위탁판매인으로 지정하고 위탁하는 청과물과 함께 표준송품장을 첨부하여 경매개시 시각 1시간 전까지 경매장에 하역·진열을 하여야 하며, 도매시장법인은 출자로 부터 수탁 받은 청과물을 성실히 판매하기로 한다.

**제2조(책임한계)** 도매시장법인은 출자가 판매 위탁하는 청과물을 하차 후 판매 시까지 보관 책임을 진다.

**제3조(출하대금의 지급)**

-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자가 위탁한 청과물의 출하대금은 판매 후 3일 이내에 출하자 또는 출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지정된 송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 한다.
- ② 출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송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도매시장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제반 책임은 출자가 진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급 한다.
  - 1. 출자가 경매 종료후 경락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
  - 2. 경매 종료후 상품성에 하자가 있어 경락자가 출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
  - 3. 출자의 지정된 송금계좌가 없는 경우

**제4조(약정기간)**

- ① 본 약정서의 약정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-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출자가 본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약정연장의 갱신거절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**제5조(약정해지)** 도매시장법인 또는 출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본 약정을 중도에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.

**제6조(위탁수수료)**

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시행규칙」 제39조제4항 제2호 및 제5항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이 정한 위탁수수료를 출자는 출하대금에서 차감, 도매시장법인에게 지불한다.

**제7조(출하자장려금)**

- ① 도매시장법인은 본 약정에 의하여 출자가 판매를 위탁한 청과물 판매가격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출하자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출하자장려금 선지급처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한 친환경농산물, 우수관리 인증농산물(GAP) 및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추진하는 산지안전성농산물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한 바에 의하여 우대 지급할 수 있다.

**제8조(판매 및 유포)**

-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자가 위탁한 청과물을 1일 이내에 판매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하 당일 판매를 유포할 수 있다.
  - 1. 경매종료 후 입하된 청과물을 경매·입찰,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없을 경우
  - 2. 출자는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청과물 안전성 검사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

- 3. 출하자가 위탁한 청과물이 부패·변질, 선별·포장 등 상품성 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
- 4. 출하자가 경매 종료후 판매의 유보를 요청한 경우
- 5. 출하자가 판매일을 지정하여 판매를 요청한 경우
-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능 하여 위탁한 청과물을 출하자가 인수하거나 폐기처분 하는 경우 운임, 상·하차비, 보관료, 청소비 등 제비용은 출하자가 부담한다.

**제9조(정가수의매매)**

- ① 출하자는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8조(매매방법)에 따라 사전예약으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출하자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매매를 요구한 때에는 표준송품장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③ 출하자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매매를 요구한 때에는 매매체결 후 매매방법의 차이로 발생한 가격 차이에 대해 출하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.

**제10조(개인정보보호)**

-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의 정보수집 시 출하약정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. 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.
  - 1. 성명    2. 주민등록번호(비사업자)    3. 주소    4. 전화번호    5. 송금계좌번호    6. 사업자등록번호
  - 7. 출하자신고번호
- ②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출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하약정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·제공은 청과물 위(수)탁 판매 약정서를 체결하는 때에 출하자가 동의를 한 것으로 한다.
- ④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출하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- 1. 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- 2.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
  - 3.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⑥ 출하자는 언제든지 도매시장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도매시장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.

**제11조(관할법원)** 본 약정으로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출하자의 주 된 사업장 소재지의 법원으로 한다.

**제12조(해석)** 본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또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해당 법령의 규정 및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.

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, 약정 내용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,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.

년    월    일

(수탁자) 주식회사 중앙청과  
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번지 (인)  
 대표전화 (02)3435-3700 FAX(02)3435-3834~5  
 대표이사 이 원 석

(위탁자) 출하자명 :  
 주 소 :  
 대표자명 : (인)  
 사업자(주민)등록번호 :  
 전화번호 : FAX번호 :

※ 첨부서류 ▶ 농협, 법인(농업회사, 영농조합 등), 작목반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  
 ▶ 산지유통인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산지유통인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  
 ▶ 개인(비사업자) :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

#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- 청과물 위(수)탁판매 약정서 체결 및 본인 경력결과 제공서비스 -

## □ 청과물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대한 동의

- 청과물 위(수)탁판매 약정서 체결 (필수)
- 경력결과 제공서비스 (선택)
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	주민등록번호, 이름, 주소 출하자신고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(휴대폰)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	필수 (출하약정)	출하자관리 업무 전반 출하실적 확인서 발행 출하실적 계산서 발행 농산물의 반출 관련 업무처리 전반
	선택 (경력결과전송)	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출하농산물 경력가격 제공 (본인)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	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다만 업무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※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청과물 위(수)탁판매 약정서 체결 및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명시된 업무처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		

필수 [출하약정]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	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
선택 [경력결과전송]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	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

## □ 경력결과 제공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 [선택]

제공목적	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출하농산물 경력가격 제공 (본인)
제공항목	휴대폰번호, 출하자신고번호, 서비스구분
제공받는자	동화청과, 한국청과, 대아청과, 서울청과, 농협경제지주가락공판장 서부청과, 강서청과, 농협경제지주강서공판장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
※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목적에 명시된 업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	

선택 [3자 제공 동의]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	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년 월 일

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동의확인(서명)